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2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유동수・아주진비・신정훈

이상직 · 김경만 · 김두관

양정숙 · 홍영표 · 이성만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 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7조제6항).
-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요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 되, 1년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함(안 제 249조의2제2호 및 제249조의11제6항제2호).
- 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제249조의12 제9항).
- 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8제1항).
- 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시정요구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제6항 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해당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으로 한다.

제249조의2제2호 중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을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으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

나.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경험이 1년 이상 있을 것 제249조의7제3항 중 "관하여"를 "관하여 분기별로"로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를 "제83조까지, 제8 9조"로,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를 "제241조, 제247조제5항제3호·제5호, 제248조"로 한다. 제249조의11제6항제2호 중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을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

나.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경험이 1년 이상 있을 것제249조의12제9항 중 "관하여"를 "관하여 분기별로"로 한다. 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을 "제241조, 제24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 24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및 이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한책임사원을 두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	6
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u>집합투자업자 또는</u>	집합투자업자, 투자회
<u>투자회사등</u> 에 대하여 관련된	사등 또는 해당 투자회사의 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u>사</u>
<u>투자회사등은</u>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	투자기구의 투자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	
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	
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1. (생략)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 설>

-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등) ①・② (생 략)
 -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1. (현행과 같음)
2. <u>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u>
하나를 충족하는
가.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
나.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경험이 1년 이
<u>상 있을 것</u>
1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u>관하여</u>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 7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 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 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 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 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 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 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 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 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

관하여 분기별로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83조까지, 제89조

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 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 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 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 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 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 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 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 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 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 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 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 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 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 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⑧ (생 략)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 ⑤ (생략)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

제241조, 제247조제5항
제3호·제5호, 제248조

② ~ ⑧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6) -----

- 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생략)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 설>

⑦ ~ ⑨ (생 략)

-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 제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 ⑧ (생략)
 -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 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

•
1. (현행과 같음)
2. <u>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u>
하나를 충족하는
가.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
나.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경험이 1년 이
<u>상 있을 것</u>
<u> </u>
[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
같음)
9

(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 저 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 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 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 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 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 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 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 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 지,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 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u>관</u>
	하여 분기별로
제	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제241조, 제248조
	·